

# 고 성 군 계 획 조 례 안

(의안번호 제805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 1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4. 1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4. 22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안이유

-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재정 ·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3층에서 2층으로 강화함(안 제14조)  
나. 개발행위 중 주거지역 2만㎡, 상업지역 2만㎡, 공업지역 4만㎡미만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개발행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1만㎡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신설(안 제27조, 제28조)  
다. 제1·2종자연경관지구, 제1·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의 건축규모제한 등을 선철함(안 제31조 내지 제51조)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완화함(안 제56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은 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위해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수도 행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재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수돗물 정기검사는 연간 몇 회인가?
- 답 : 상수 원수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와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가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상수 원수의 경우 우리 지역에는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계곡수와 지하수가 해당되며, 계곡수 일때는 대장균군 등 5항목은 반기 1회이상, 카드뮴 등 9항목은 2년에 1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있고 지하수 일때는 카드뮴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우리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수도꼭지 검사는 5항목에 대하여 매월검사, 급수과정 모니터링(3곳 있음)은 12개 항목에 대하여 매분기 검사토록 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14항목에 대하여 분기검사,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 우리지역 2곳)은 일반세균등 8개 항목은 매분기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인 48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디다만 정수장의 경우 항목에 따라 매일검사, 매주검사, 매월검사 등으로 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기관은 검사항목에 따라 보건소 또는 국립 수질검사 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3. 4.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